

코로나 19 & 하우스징

주택 재정 지원 및 자원

렌트비를 못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2020년 8월 31일에 서명된 캘리포니아의 2020년 새 COVID-19 임차인 구제법에 따르면 COVID-19 대유행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 할 수 없는 거주 세입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특정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될 수 없습니다.



어떤 상황에서 강제퇴거로부터 보호 되나요?

유효한 영향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을 못 하게 된 사항에 포함됩니다.

- 자신/가족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
-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
- 수입이 감소 하였을 경우

퇴거를 방지하는 방법

퇴거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COVID-19의 영향으로 지불 할 수 없는 COVID-19 관련 재정적 고통에 대한 사전 서면 신고서에 서명하여 매달 집주인에게 보내야 합니다.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2021년 1월 31일까지 마감 된 임대료의 25%를 지불해야 합니다.

신고 양식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:

<https://dcba.lacounty.gov/wp-content/uploads/2020/05/LA-County-DCBA-Self-Certification-Notice-to-Landlord-5.13.20-2.pdf>



추가 정보



- 퇴거 통지를 받으면, Los Angeles의 Legal Aid Foundation을 통해 로스 앤젤레스 전역의 100,0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lafla.org를 방문하거나 (310)899-6200으로 전화하십시오.
- Bet Tzedek은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민 신분을 고려하지 않는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<https://www.bettzedek.org/our-services/rapid-response/>를 방문하거나 (323) 939-0506으로 전화하십시오.
- 더 많은 법적 자료 정보를 보려면, <https://www.stayhousedla.org/> 또는 <http://lawhelpca.org/>를 방문하십시오